
2019년도 「노사문화유공」 정부포상 계획(안)

2019. 5.

 고용노동부

목 차

I. 목적	1
II. 그간의 경과	1
III. 2019년도 포상개요	1
IV. 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	4
V. 포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기준	6
VI.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	9
※ 붙임 1. 노사문화유공 포상신청(추천)서	10
(구비서류1) 사업체개요서	
(구비서류2)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	
(구비서류3) 공적조서	
(구비서류4)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	
(구비서류5) 포상대상자 이력서	
(구비서류6)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	
붙임 2. 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	19
붙임 3.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점수표	20
붙임 4. 공적사항 조사의견서	21
붙임 5. 노사문화유공 공고문	22

I**목적**

- '상생·협력의 노사문화 구축'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를 발굴·포상하여
 - 노사파트너십을 실천한 노동자와 사용자를 격려하고, 노사협력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
 - 특히,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일터조성, 일·생활의 균형 실현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나가는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·포상

II**그간의 경과**

- 2008년부터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서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18년까지 총 552명을 포상

계	훈장	포장	대통령 표창	총리 표창	장관 표창
552	73	66	91	93	229

- 2018년에는 총 41명을 포상

계	훈장					포장	대통령 표창	총리 표창	장관 표창
	금탑	은탑	동탑	철탑	석탑				
41	-	2	1	1	1	4	9	8	15

* 노동자대표(21명, 51.2%), 사용자(18명, 43.9%), 발전유공자(2명, 4.9%)

Ⅲ

2019년도 포상개요

【 운영 방향 】

- ◆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 운영
- ◆ 철저한 공적 검증·심사를 통한 공적위주의 포상실시
- ◆ 숨은 노사협력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

1] 포상대상

- (노동자대표·사용자)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좋은 일터 조성, 일·생활 균형실현, 원·하청 상생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
- (발전유공자)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

* 대상자별 포상규모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2] 포상규모(안)

- 정부포상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) 총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,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*을 고려

* 훈·포장과 표창의 비율 2:8

- 최종 포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

< '19년도 포상규모(안) >

(단위: 점)

구분	총계	정부포상					장관표창
		소계	훈장	포장	대통령표창	총리표창	
'19년	41	26	5	4	9	8	15
'18년	41	26	5	4	9	8	15
'17년	41	26	6	6	7	7	15
'16년	44	27	6	7	7	7	17

* 훈장 5점: 금탑 1점, 은탑 1점, 동탑 1점, 철탑 1점, 석탑 1점

③ 국민추천제 실시

- 상생·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헌신해온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·포상하기 위해 국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포상 운영 (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<행정안전부>)
 - 국민참여를 통한 추천 접수를 위해 포상계획 적극 홍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창구 마련(www.moel.go.kr/posang)
 - 온라인(홈페이지 및 SNS), 고용센터 디지털TV, 언론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
 - 국민추천제 안내·홍보 시 온라인 접수방법 이외에도 접수기관의 우편주소 및 담당자 e-mail 주소를 안내하여 국민추천 활성화 도모
 - * 안내 시 각 기관별로 추천대상자 요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민추천인의 혼란 방지
 - * 자기추천 또는 소속 직원 추천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, 대상자의 공적 직접 조사 등 포상의 신뢰성 확보
- (참여방법) '고용노동부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'*에 안내 및 게시
 - * www.moel.go.kr/posang

④ 포상수여

- '19년 11월 말 시상식 개최 예정
 - * 노사문화 대상(大賞) 시상식과 합동 개최

IV

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

1 대상별 포상자격(추천마감일 기준)

○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

-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대표*

* 노동자대표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(위원장, 지부장, 지회장,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)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동자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

* 초기업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

- 사업(장)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

○ 발전유공자

-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

2 신청방법

- 접수기간: '19. 6. 10.(월) ~ 7. 19.(금) 까지

- 접수처: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(1)과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 또는 추천

※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 홈페이지(알림마당)에서 다운받아 작성

- (제출서류) 노사문화유공 포상신청(추천)서[붙임1] 및 구비서류 각 1부

* [별지1~6] ①사업체개요서, ②포상대상자 공적조서, ③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, ④세부공적내용, ⑤이력서,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- (국민추천) '고용노동부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'를 통해 접수

- 접수방법: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

- 국민추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국민참여 - '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'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 (www.moel.go.kr/posang)

③ 포상 추천제한 기준

○ 이미 포상수상 경력이 있는 자 ('수여일'로부터 '추천일' 기준)

- 정부포상을 받는 자는 다시 포상을 받기위해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 이상 추가적인 공적을 쌓아야 함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·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포상을 받을 수 없음

○ 「정부포상 업무지침<행정안전부>」 상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자

- * ▲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▲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
- ▲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▲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
- ▲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- ▲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
- ▲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- ▲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하거나 논란이 있는 자

○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

-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
- *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간주
-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
- * 포상 추천일 이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
- 고용노동부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이 확정된 후에 수상을 포기한 자(3년간 추천 제외)

V

포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기준

1 포상대상자 추천

- 지방고용노동청(6개) 및 대표지청(2개) 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'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'[붙임3]에 따라 심사한 후 본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

<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>

- 지방청장(대표지청장)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
- 위원장은 지방청장(대표지청장)이 되며, 위원은 소속 지청장 중 지방청장(대표지청장)이 지명하는 자로 함
- 간사는 지방청(대표지청) 노사상생지원과장(근로개선지도1과장)이 됨

- 중소·민간분야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 등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

-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별 추천 인원

(단위: 점)

구 분	합계	서울청	충부청	부산청	대구청	광주청	대전청	경기청	강원청	
합계	53	12	7	8	5	6	5	8	2	
노사대표	노	21	5	3	3	2	2	2	3	1
	사	25	6	3	4	2	3	2	4	1
발전유공자	7	1	1	1	1	1	1	1	-	

* '19년 포상규모(41점) 및 결격 사유자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, 포상규모의 130%인 총 53명으로 하며, 18년 10월 지청별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배분

* 다만,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경우 청별 추천인원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

- 발전유공자의 경우 본부에서도 발굴·추천하며, 본부에서 접수한 국민추천자의 경우 각 청으로 배분

② 추천 시 제출서류

- 노동자대표, 사용자 등이 지방관서에 제출한 서류 일체
 - (일반접수) 노사문화유공 포상신청(추천)서[붙임1] 및 구비서류* 각 1부
 - * [별지1~6] ①사업체개요서, ②포상대상자 공적조서, ③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, ④세부공적내용, ⑤이력서,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 - ** 경력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증명서, 4대보험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하여 기록하고 인정
 - (국민추천) 온라인 또는 본부 운영지원과로 접수된 국민추천의 경우 추천인이 제출한 국민추천서[온라인]와 지방관서(접수관서)에서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체 개요서 등 구비서류[별지1~6] 각 1부
- 공적 조사의견서[붙임2],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점수표[붙임4]

③ 추천 시 유의사항

- 적격자가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상계획, 대상자 추천절차 등을 적극 홍보
 - *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 사항 게재, 각종홍보물 배포 및 부착,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
-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 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세히 기술
 - 계량적인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내용*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
 - * (예시) "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해결" (X)
"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('16년 00명→'19년 00명)하여, '16년 대비 '19년 주당 평균근로시간 0시간 감소" (O)

-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공적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타 지역사회나 근무처의 평판을 고려
 - *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를 배제
- 국민추천에 의한 추천서[온라인]를 접수한 지방관서는 피추천인의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 [별지1~6]를 확보하여 청(대표지청)으로 이송
 - *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내용 조사 및 구비서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 고용노동청(대표지청)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본부 추천 여부 결정
-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 확인
 - * 포상자 확정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 됨을 사전고지
-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
-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아래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준수
 - * 추천 신청서 접수(7.19.까지), 접수내용 이송(7.22),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(7.31)

4] 심사기준

- 공적기간(10) 및 업적도(90) [붙임3]

지표명	심사지표	배 점	측정방법
공적기간 (재직기간) (10)	○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의 연수	10	재직년수 × 0.5점 (최대 10점)
업적도 (90)	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	30	심사자 점수부여
	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	30	상동
	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	20	상동
	○ 사회공헌활동	10	상동
합 계		100	

① 포상대상자 확정

○ 포상제외자 및 포상규모 확정

-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결과에 근거하여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,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

○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후보자 선정

-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별 훈격 및 추천순위 결정

*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(훈령 제263호) 제7장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(위원장 차관)하며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0% 이상 민간심사위원 포함

○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(「2018 정부포상업무지침」 <행정안전부>)

- 포상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,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

* 포상 수여 예정일 90일 전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개시

- 차관회의·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

② 포상실시

-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에 따라 포상 및 전수 실시

-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

③ 참고사항

- 포상과 관련하여 본 계획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「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<행정안전부>」에 따라 시행함

[붙임1]

노사문화 유공 포상신청(추천)서

① 성 명 (사업체명)		② 소속 및 직위 (대표자)	
③ 주 소 (직장소재지)		④ 입 사 일 (설 립 일)	
⑤ 노동자수 (조합원수)	명 (명)	⑥ 업 종 (주생산품)	
⑦ 법인등록번호		⑧ 사업자등록번호	
⑨ 신청담당자 소속·연락처	사무실	⑩ 추천인 연락처	사무실
	휴대폰		휴대폰

위 노동자대표·사용자·일반유공자를 2019년도 노사문화 유공 정부 포상 대상자로 신청(추천) 합니다.

2019년 월 일

(신청·추천인) 소속·직위 :
성 명 : (인)

(신청·추천인) 사업체명 :
대 표 자 : (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※ 구비서류
사업체개요서,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, 포상대상자 공적조서·공적개요서·이력서,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

신청(추천)서 작성요령

- ① 성명(사업체명): 노동자대표·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되, 괄호 안에 소속 사업체명 기재
 - ② 소속 및 직위(대표자): 노동자대표·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하되, 괄호안에 소속 사업장 대표자 기재
 - ③ 주소(직장소재지): 노동자대표·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되, 괄호안은 직장 소재지 기재
 - ④ 입사일(설립일): 노동자대표·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입사일을 기재하되, 괄호안은 사업장 설립일 기재
 - ⑤ ~ ⑧: 사용자일 경우 작성
- ※ 기업단위 신청(추천)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산재보험관리번호,
사업장단위 신청(추천)은 당해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및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입
- ⑨ ~ ⑩: 노동자대표·사용자·일반유공자 모두 기재

[구비서류 1]

사업체 개요서			
소 속 사업체	사업체명		
	대 표 자		
	소 재 지		
	전화번호		
	규모(중소·대기업)		
	노동자 수		
	업종(생산품목)		
	설립일자		
	외투기업	유(국가명, 지분율) . 무	
노 동 조 합	명 칭		
	상급단체		
	대 표 자		
	조합원수		
	설립일자		
	임<단>협 만료일		
노사분규 유무	년 (유·무),	년 (유·무),	년 (유·무)
산재율(%)	년 (%),	년 (%),	년 (%)
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현황(천원)	년 (),	년 (),	년 ()
장애인고용부담금체납유무	년 (유·무),	년 (유·무),	년 (유·무)
장애인고용인원(명)	년 (명),	년 (명),	년 (명)
고용보험료납부금액(천원)	년 (),	년 (),	년 ()
고용보험료체납유무	년 (유·무),	년 (유·무),	년 (유·무)
확인자 소속 :	직급 :	성명 :	(서명 또는 인)
<p>※ 작성요령</p> <p>.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함</p> <p>.장애인고용 관련 사항 및 고용보험료 관련 사항은 최근 3년간 현황 기재</p>			

[구비서류 2]

포상대상자 공적조서

성 명	(한 자)		
주민등록번호		군 번 (군인의 경우)	
		국 적 (외국인의 경우)	
주 소			
직 업		소 속	
직 위		직급 또는 계급	
추 천 훈 격		추 천 순 위	
공 적 분 야		공 적 기 간	

공적요지(70자 이내)

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70자 이내로 작성 (글자 수는 한글 메뉴 → 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통계에서 확인함)

조 사 자			
소 속		직 위	
직급 또는 계급		성 명	(인)

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기관장 직위

성명

직인

주요 경력	
연 월 일	이 력 사 항
. . . ~ . . .	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
. . . ~ . . .	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
수 여 일 자(년 월 일)	포 상 종 류
. . .	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·훈격까지 정확히 기재
. . .	
공 적 내 용	

-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,000자 이상 작성
(글자 수는 한글 메뉴 → 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통계에서 확인함)
-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(수치)자료 포함할 것
 - 사진 등 기타자료는 [구비서류4] 세부공적내용에 첨부가능하며, 공적개요서에는 사진 등을 제외하고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'기술'해야 함
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

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

(포상대상:)

성명 (연령)	소속 직위 공적기간	생년월일 (성별)	업종 (주생산품)	공적개요(예시)
홍길동 (만 55세)	000산업 생산팀장 25년 8월	00.00.00 (남)	제조업 (자동차 부품)	<p>◎ (공적개요 및 당해 분야에 중사경험한 경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■ (노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사공동워크숍 매년 0회 개최, 산행대회 등 다양한 노사회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강화하여 '00년 이후 노사 무분규 달성 ○ 자녀학비 전액 지원, 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처우개선 ○ 산업 특성상 애로사항이 많았던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신리로 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C OFF제, 정시퇴근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여, '00년 대비 '00년도 주당평균근로시간 00시간 감소 ■ (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단축 여건 마련과 남성 육아휴직 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성 육아휴직자 수 매년 증가('16년 00명→'17년 00명→'18년 00명) - 노사간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개선하여 사용 확대 ('16년 00명 → '17년 00명 → '18년 00명 → '19년 현재 00명) ○ 여성리더십 교육 투자로 여성임원비율 증대('00년 00%→'00년 0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0년간 여성근로자 00명 신규채용 ■ (차별해소 관련 실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협력사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규직 전환 노력('00년 00명, '00년 00명, '00년 00명) - '00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('00년 도급계약 체결시 0% 이상 계약단가 인상) ■ (사회공헌활동) * 기타 조직화합, 사회봉사,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□□기금 000만원 출연, 00년간 어린이 환우 후원(총 00만원), 지역 장학 사업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<p>*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</p> <p>※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※ 가장 주요한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※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맞도록 작성 (맑은고딕, 글자크기 11, 줄간격 130)</p>

※ (작성요령) 포상대상란은 "노동자 대표", '사용자' 또는 '발전유공자'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
 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작성

[구비서류 4]

포상대상자의 세부공적내용

<공적내용> (20매 이내)

※ 작성요령

▲ 추진실적은 전체 20매 이내로 하되,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

▲ 주요작성내용(심사지표 기준)

○ 당해 분야에 종사·경험한 경력의 년수

(예: 노동자 및 노조간부, 사용자로서의 재직기간 등)

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

- 노동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,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, 노사협력프로그램 실시 실적,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, 경영위기 극복 실천 사례

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

- 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정도, 노동시간단축 노력정도, 유연근무제 활용실적,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, 여성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 고용,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

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

- 연령별·성별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,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,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, 협력기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, 원·하청 및 대·중소기업 상생실천

○ 사회공헌활동

- 봉사활동,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포상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19. . . .

성명

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**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**, 포상후보자 **공개검증 및 공적심사**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**군번(군인의 경우)**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 **서훈기록부는 영구**, 기관별 **포상추천서 및 상훈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**

<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[붙임2]

공적사항 조사의견서				
포상대상자 인적사항	성명 (사업체명)		소속 및 직위 (대표자)	
	주소 (직장소재지)		공적기간	
조사사항			조사결과	
종합의견				
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년 월 일 </div>				
(서명 또는 인)				

노사문화 유공 심사기준

지표명	심사지표	배 점 (세부배점)	측정방법
공적기간 (재직기간) (10)	○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의 연수	10	재직연수 × 0.5점 (최대 10점)
업적도 (90)	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	30	심사자 점수부여
	- 노동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		
	-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		
	- 노사협력 프로그램* 실시 실적 * 일터혁신, 노사공동 워크숍, 노사관계진단 등		
	-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		
	- 경영위기 극복 실천 사례		
	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	30	심사자 점수부여
	- 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		
	- 노동시간단축 노력 정도		
	-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		
	-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		
	- 여성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 고용		
	-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		
	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	20	심사자 점수부여
	- 연령별·성별 차별없는 일자리환경 구축		
	-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		
	-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		
	- 협력기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		
	- 원·하청 및 대·중소기업 상생실천		
	○ 사회공헌활동	10	심사자 점수부여
- 사회공헌활동 등			
합 계		100	

[붙임4]

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
(노동자대표 · 사용자 · 일반유공자)

추천기관 : ○○지방고용노동청장

추천 순위	성 명	소 속	직 책	성 별	합 계	재직 기간 점수 (10)	공적 점수 (90)	비고
1	홍길동	주식회사 가나다	이사	남	78	8	70	근로자의 날 장면표창(16)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[붙임5]

2019년도 「노사문화 유공」 정부포상 후보자를 찾습니다

-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, 사용자 및 발전유공자를 찾습니다.

◆ 포상대상

대 상	신청(추천)요건(2019. 7. 16. 현재)
노동자대표 사용자 발전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노·사 대표) 노사협력 실천,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좋은 일터 조성, 일·생활의 균형실현, 원·하청 상생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 또는 사용자 · (발전유공자)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

◆ 포상내용: 훈장·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고용노동부장관표창

* 포상별 최소 공적기간 : 훈장 15년 이상, 포장 10년 이상,
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, 장관표창 1년 이상

◆ 신청(추천)서류: 신청(추천서) 및 구비서류 각 1부

◆ 접수기간: 2019. 6. 10(월) ~ 7. 19(금)

◆ 접수기관: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(1)과

◆ 접수방법: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(작성요령 참조)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❖ **국민추천제:**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가능한 「국민추천제」를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본인 제외).

※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posang) 또는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안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추천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 주소:

담당자: ○ ○ ○(전화: 000-000-000, 이메일:)

◆ 추진일정

-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에 포상 대상자 및 훈격 확정 → 2019년 11월말 포상실시 예정

◆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「2019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2019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과 신청(추천)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www.moel.go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☎044-202-7598), 또는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노사상생지원과·근로개선지도(1)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지방고용노동청·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·근로개선지도(1)과 연락처>

서울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2-2250-5837	부산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1-850-6373
서울강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465-8416	부산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559-6625
서울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142-8504	부산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309-1533
서울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077-6150	창원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5-239-6557
서울남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639-2234	울산지청	노사상생지원과	052-228-1832
서울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950-9814	양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370-0968
서울관악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282-9032	진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760-6508
충부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32-460-4568	통영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650-1924
인천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540-7969	대구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3-667-6267
부천시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714-8746	대구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3-605-9059
의정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850-7743	포항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271-6753
고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931-2820	구미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450-3521
경기지청(대표지청)	노사상생지원과	031-259-0282	영주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639-1154
성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788-1521	안동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851-8035
안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63-7420	광주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62-975-6311
안산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12-1906	전주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63-240-3380
평택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1-646-1126	익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839-0022
강원지청(대표지청)	근로개선지도과	033-269-3573	군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450-0528
강릉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650-2511	목포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280-0138
원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769-0805	여수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650-0125
태백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33-550-8622	제주근로개선지도과	근로개선지도과	064-728-6118
영월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33-371-6231	대전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42-480-6273
			청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299-1164
			천안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41-560-2891
			충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840-4061
			보령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1-930-6123